

09 재학생 보험 및 법률상담 서비스

9.1. 재학생 보험

재학생이 교내 시설물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학교생활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고 발생 당시 가입된 보험 기준에 따라 보장 내용 및 보상한도액이 적용됨.

9.1.1 가입대상(피보험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교환학생

9.1.2. 보상적용

학교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나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이하 "학교 업무")와 관련된 학교생활 중 발생한 교내 상해 사고

*상해치료비의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청구 가능.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반드시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며 심사 후 금액 지급 여부가 결정됨.

9.1.3. 보상종류 및 한도

내용	보상한도액(원)	
교내·외 치료비*	상해치료비	2백만
	사망/후유장해	1억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상해의료비	20억
	사망/후유장해	2억

*교내·외 치료비: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교직원의 인솔·감독 하에 이뤄지는 공식적인 교외 활동 포함)에서 학교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보상한도액 내에서 상해 치료비 지원
(단, 현장실습생의 경우 최대 1백만 원 보상)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연구실 안전규정 관련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별도 보험으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입은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름 (교내 안전팀 등록 연구실 안전관리대상 학과 대학(원)생에 한하여 적용)

9.1.4. 보험금 청구 방법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대학 행정실로 제출

* 총학생회, 중앙동아리 교내 활동 중 발생한 사고: 학생처 학생지원팀(학생문화관 202호) 문의

*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 기숙사 행정실 문의

* 교내 안전팀 등록 연구실 내 실험 중 안전사고: 관리처 안전팀

9.1.5. 제출서류(일반 상해보험사고)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피해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
- 사고경위서
- ※ 유레카 서식모음 게시판에서 "재학생 단체보험" 서식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외국인 교환학생은 'Certificate of Enrollment')
- 진단서
-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 시 수술확인서
-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9.2. 법률상담 서비스

이화법조인회 (이화여대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으로 약 2,000여 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 동창들 중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이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처 홈페이지 (<http://giving.ewha.ac.kr>) ▶ 이화동창 ▶ 동창 프로그램 ▶ 이화법조인회 무료법률상담

9.2.1. 온라인 법률상담

1:1 답변으로 상담해드리며, 모든 온라인 상담은 익명 처리됩니다. 단, 본교 졸업생, 재학생, 교직원에게는 상담내용이 공개되므로, 본인 및 관련인의 실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9.2.2. 오프라인 법률상담

본교 출신 전문 변호사들과 대면(전화)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대외협력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ewha21@ewha.ac.kr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 메일 제목은 [법률 상담 신청]으로 하여 위 이메일 주소로 상담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1) 신청 기한: 매주 월~금요일 정오까지 신청 시 차주 상담 진행
- 2) 상담 일시: 담당 변호사와 개별 연락하여 조율
- 3) 상담 장소: 담당 변호사 사무실

※ 문의: 대외협력처 02-3277-2926 (통화 가능 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오후 12시~1시 제외)